

사회관계장관회의	
연월일시	2015. 9. 21.
안전유형	보고안전

공  
개

---

## 공공저작물 이용 활성화 시책

“ 이 저작물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

---

2015. 9. 21.

문화체육관광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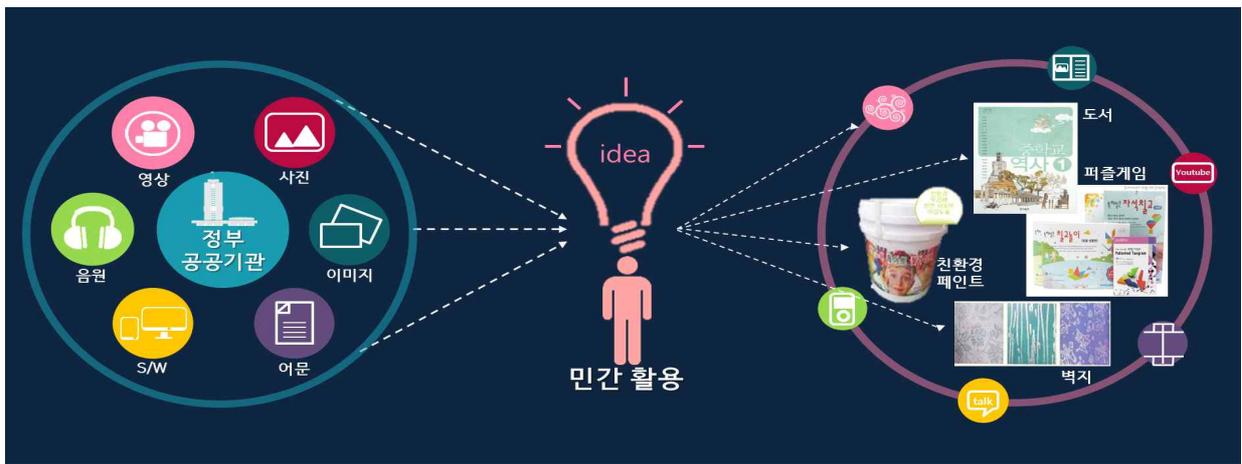
# 목 차

I . 추진배경 .....	1
II . 주요성과 및 개선사항 .....	2
III . 목표 및 추진방향 .....	5
IV . 주요 추진과제 .....	6
1. 공공저작물 확보 및 수집 강화 .....	6
2. 공공저작물 유통 및 이용 활성화 .....	10
3.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관련 제도 정비 .....	13
V . 실행계획(Action Plan) .....	15
별첨 : 참고자료 .....	16

# I. 추진배경

## □ 공공저작물은 높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창조자원

- 새로운 서비스나 상품개발의 자원으로써 공공정보 활용 사례 증가
  - \* 서울시의 버스운행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개발
- 특히, 신뢰성을 지니면서도 저작권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는 공공저작물은 창조경제를 이끌 중요한 신성장동력



## □ 공공저작물 창조자원화에 대한 관심 확산

- '정부 3.0' 추진으로 공공정보의 적극적인 개방과 공유,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창조경제 지원
  - 공공데이터 개방 및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13.12) 및 저작권법 제24조의2 신설('14.7)
- 산업계를 중심으로 공공저작물에 대한 수요 및 활용 증가
  - \* 공공저작물 수요는 '06년 21%에서 '13년 57%로 크게 증가(코리아리서치, 2013)

## □ 자유이용 정책 확산을 위한 중장기 전략 필요

- 저작권법 제24조의2 시행('14.7.1)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공공저작물은 허락 없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나,
  - 공공기관의 공공저작물인 경우 국가가 수립한 '공공저작물 이용 활성화 시책'에 근거하여 자유이용 가능(저작권법 제24조의2제2항)
- 공공저작물 생산 비용을 부담한 국민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해 갈 수 있도록 체계적 정책 확산을 위한 중장기 계획 마련 필요

## II. 주요성과 및 개선사항

1

### 주요 성과

- ◆ 저작권법 제24조의2 시행('14.7.1) 이후 참여기관 및 개방 저작물 건수 증가, 민간 활용 사례 확산
  - \* 참여기관 : ('14.7월) 210개 기관 → ('15.7월) **383개 기관**
  - \* 개방저작물 : ('14.7월) 271만 건 → ('15.7월) **408만 건**

#### □ 정책 개요

##### ○ (관련근거) 저작권법 제24조의2

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 (추진경과)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마련 등 공공저작물 개방 확대를 위한 제도기반 구축(저작권법 제24조의2 신설로 법적 근거 공고화)

- \* (' 12. 2) 「공공저작물자유이용허락표시기준(이하 '공공누리')」 공고 (2012-29호) 및 공공저작물 포털 사이트 '공공누리(www.kogl.or.kr)' 오픈
- \* (' 13. 12) 저작권법 제24조의2 신설(' 14.7.1 시행)
- \* (' 14. 6)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업무처리요령 배포
- \* (' 14. 12) ' 14년 규제개혁 대표사례 선정(국무조정실)

##### ○ (주요내용) △공공누리 보급·확대(공공누리 포털), △공공저작물 개방(권리처리)지원 △민간 활용 컨설팅 △자유이용 인식제고 등

#### □ 추진 현황

##### ○ (정책 참여 기관) 총 365개 기관(법 24조의2 시행 이후 1.7배 증가)

구 분	국가기관	국가소속	기타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기타기관	합 계
전체기관	49	402	5	260	316	16	1,048
'14년 7.1	36	32	2	69	57	14	210
'15년 7.1	36	153	2	93	67	14	365
증 감	-	121	-	24	10	-	+155

○ (공공저작물 개방건수) 총 391만 건(법 24조의2 시행 이후 1.4배 증가)

구 분 (이용조건)	 (영리/변경 가능)	 (변경만 가능)	 (영리만 가능)	 (영리/변경 불가)	계
'14년 7.1	71,351	110,710	5,598	2,525,170	2,712,829
'15년 7.1	1,175,848	56,961	11,140	2,666,392	3,910,341
증 감	1,104,497	△53,749	5,542	141,222	1,197,512

※ 감소한 2유형 53,749건은 저작권법 개정 이후 1유형으로 전환

○ (민간활용 대표사례)

사 례	주요 내용
 <p><b>홈아트 월 라이트</b> HOMEART-Wall Light</p> <p>종이 없는 천연소재 도료 벽지</p>	<p><b>홈아트 - 친환경 페인트 벽지무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수 롤러에 문화포털에서 개방한 공공저작물을 각인하여 종이벽지 없이도 천연도료만으로 벽지효과 및 무늬를 표현할 수 있도록 개발</li> <li>- 화목, 사랑, 행운, 승진 등 다양한 의미를 가진 전통문양의 의미를 벽지무늬로 재해석하여 상용화, <b>매출 1억원 이상 증가('15년 6월)</b></li> <li>- 제2회 정부3.0 문화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우수상(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상) 수상</li> </ul>
 <p><b>퍼즐리아 - 구슬퍼즐, 자석칠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방된 공공저작물을 제품 포장지에 활용하여 교육용 게임 상품 상용화 및 해외수출, <b>매출 2억원 달성('15년 6월)</b></li> </ul>
 <p><b>동아출판 - 교과서 및 참고서 등 교육 교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방된 공공저작물을 교과서 및 참고서 등 교육 교재에 활용하여 양질의 교육 콘텐츠 제공</li> <li>* <b>13년 동아출판 중등교과서에서 공공저작물 1,180건 사용</b></li> </ul>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확산 노력에도 불구하고, 활용가치 높은 저작물 부족, 기관 인식 부족, 저작권 분쟁 우려 등으로 적극적인 활용 저조

## □ 활용가치 높은 공공저작물의 양적·질적 부족

- 출처표시만 하면 가장 자유로운 이용(영리+변경가능)이 가능한 공공누리 제1유형을 부착한 공공저작물은 전체의 30%에 불과
- 또한, 보도자료 등 어문저작물이 전체의 75%를 차지하고 있어, 사진·영상·음원 등 민간에서 활용도가 높은 분야의 저작물 확충 필요

## □ 공공저작물 개방을 고려한 업무처리 및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 생산단계부터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을 고려한 업무처리가 요구되나, 실무담당자의 인식부족으로 인해 권리확보가 미흡한 사례 발생
  - ※ 권리처리사업 결과, 제3자 저작권 포함, 계약서 부재 등 이유로 개방할 수 없는 자료가 전체의 88%를 차지
- 또한, 총괄담당자 부재로 저작권 관리업무에 대한 회피 대두
  - ※ 89개 기관 대상 조사결과 38.7%가 전담인력 확충을 요구(코리아리서치, 2013)

## □ 공공누리의 일관된 적용 및 저작권 분쟁 우려 최소화 필요

- 국민이 공공저작물을 자유이용 하고자 하여도, 공공기관의 저작재산권 보유여부 등의 확인이 어려운 상황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기준인 '공공누리'를 보급하고 있으나, 민간기준(CCL 등)과 사용이 혼재되어 이용자의 혼란 야기
    - ※ 별도의 표시문구를 사용(공공데이터 포털)하거나 CCL 마크 사용(일부 지자체)
- 또한, 제공자 및 이용자에 대한 면책규정이 없어 저작권 분쟁 발생을 우려하여 개방과 이용에 소극적
  - ※ 공공데이터법(제36조)의 경우 제공 기관 및 이용자에 대한 면책을 규정

### Ⅲ. 목표 및 추진방향

**비전**      **공공저작물 창조자원화를 통한  
경제 혁신, 국민 행복**

**목표 (2017)**      **1,000만건 개방 & 국민 비용 절감 3조 6천억원**

**추진 전략**

기관 부담 경감을 통한 저작물 확보 강화      ▶      이용 여건 개선을 통한 민간 활용 촉진      ▶      제도 개선을 통한 공공저작물 저변 확대

공공저작물 이용 활성화 시책 수립		
공공저작물 확보 및 수집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작권 귀속처리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작/배포</li> <li>• 공공저작물 개방 대상 기관 확대</li> <li>• 개방 공공저작물 품질 제고</li> <li>• 민간 기증 공공저작물 관리 강화</li> <li>• 저작권 구매 통한 양질의 저작물 확보</li> </ul>	생성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저작물 자동수집 및 공공누리 적용편의성 강화</li> <li>• 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센터 운영</li> <li>• 공공저작물 저작권관리지침 개정</li> <li>• 공공저작물 관리 담당자 지정</li> <li>• 사용료 징수 가이드라인 제시</li> </ul>	관리 단계
유통 및 이용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 기준 적용원칙 구체화 및 확산</li> </ul>	제공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용자 면책규정 도입을 통한 민간 이용 촉진</li> <li>• 다양한 저작물 활용 신규 비즈니스 창출 지원</li> <li>• 저작물 출처표시 가이드라인 제시</li> <li>•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강화</li> </ul>	이용 단계
관련 제도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탁 관리 제도 개선</li> <li>•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위원회 등 개방관련 제도 개선</li> </ul>	사전/사후 관리

## IV. 주요 추진과제

1

### 공공저작물 확보 및 수집 강화

① 국민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공공저작물 1,000만건을 확보하겠습니다.

#### □ 저작권 권리귀속 가이드라인 제시

- 공공저작물의 생성 과정에서 자유이용정책에 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권리귀속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제시

##### 저작권 귀속의 기본 원칙

- ① 국민에게 널리 보급할 목적 및 활용도가 높은 저작물은 우선 귀속 추진  
※ 지자체 관광책자, 정책 안내 소식지 및 간행물, 공공에서 개발한 교재 등
- ② 창작자에게 권리를 부여하면 국민 이용에 제약되는 국가고시문제, 외국의 법과 제도 등을 번역한 저작물 등 우선 귀속 추진
- ③ 개방 시 민간에서 활용하면 더 큰 부가가치의 창출이 예측되는 콘텐츠
- ④ 소프트웨어는 업무 상 저작물 외 민간의 지속적인 개발을 위해 귀속 대상에서 제외

##### <업무 체크리스트(예시)>

예1) 계약서 내 저작재산권(2차적저작물 작성권 포함) 양도 규정 명시하였는가?

예2) 계약서 내 사진 및 영상저작물은 초상권 이용 동의서 등을 별도 첨부하였는가?

#### □ 자유이용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확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정책 적용대상 공공기관의 범위를 유사 입법례와 동일한 수준으로 확대하여 다양한 기관의 저작물 확보(저작권법 개정)

##### 정보공개법(제2조제3호)

##### 공공데이터법(제2조제1호)

##### 저작권법(제24조의2)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15년 316개)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기관·단체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5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

□ 개방 공공저작물 품질 제고 지원

- 권리관계 및 품질저하로 민간 활용이 불가능한 자료의 재촬영 및 복원 지원을 통해 산업적으로 활용 가능한 고품질 저작물로 개방



\* 2014년 4개 기관, 총 5,010건의 디지털촬영 및 복원 지원('16년 4.4억원)

□ 민간 기증 공공저작물에 대한 관리 강화

-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에 민간이 기증한 우수 저작물의 공공누리 적용 개방 추진(원저작자의 공공누리 적용에 대한 명시적 동의 확보)
  - \* 문순화 사진작가, 자생생물 사진 8만장 환경부에 기증(동아일보 등, '12.5)
- 저작물 기증절차 및 공공저작물 등록·관리에 대한 컨설팅 제공

□ 저작권 구매를 통한 양질의 공공저작물 확보 추진

- 산업적 활용가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저장소에서 사장되어가는 저작물의 적극적인 발굴을 위해 '국민저작물 보물찾기 공모전' 개최
  - \* 산업현장 및 실생활 이용수요가 높은 저작물에 대한 사전조사 등 실시('16년 4억원)
- 활용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는 저작물에 대해서는 저작재산권의 적극적인 확보를 통해 자유이용 가능한 공공저작물로 제공

## ② 공공저작물 개방·관리 과정에서 기관 부담을 최소화하겠습니다.

### □ 공공저작물 자동수집 및 공공누리 적용 편의성 강화

- 기관에서 개방한 저작물의 공공저작물 포털 사이트로 자동 수집 확대

<공공저작물 정보 수집시스템 체계도>



- 공공누리 소스 코드를 배포하여 기관의 공공누리 적용 편의성 강화

\* 기관 홈페이지 저작물 등록단계에서 바로 공공누리 유형 선택하여 적용 가능

<공공누리 적용 간편화 소스 코드>

### □ 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센터 운영

- 외주사업으로 추진되던 개방지원사업을 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센터 (한국문화정보원 내)로 상시 운영하여 체계적인 지원 강화('16년 6.4억원)

#### 개방지원센터 주요 기능

- ① 공공기관 보유 저작물 저작권 권리 확인, 저작권 확보 지원
- ② 변호사를 통한 공공기관 저작권 문제 상담지원 (종합지원번호:1670-0052)
- ③ 기관 상황에 적합한 공공저작권 관리방안 맞춤형 컨설팅
- ④ 공공기관 직원대상 공공저작물 개방교육 지원

## □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지침 개정

- 현행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지침을 개정하여 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담당자, 공공저작물 이용자가 참고할 수 있는 상세 매뉴얼 제공
- \* 지침에 근거한 체계적인 저작권 관리·이용을 통해 제공 및 이용 관련 분쟁 예방

### 공공저작물 관리지침 주요내용

- ①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3 반영
- ② 공공저작물 수집·생산부터 관리 및 개방까지 단계별 업무처리 요령 구체화
- ③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제도(공공누리) 적용기준의 구체적 반영
- ④ 공공저작물 이용 시 출처표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 등

## □ 공공저작물 관리 담당자 지정

- 효율적인 저작물 관리와 공공저작물의 책임 있는 제공 및 민간 자유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공저작물 관리 책임관 지정
- \*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이 겸할 수 있도록 함

### 공공저작물 관리 책임관의 주요업무

- ①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지침 시행을 총괄 관리
- ②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저작물 관리로 공공지식재산의 DB 구축 활성화

## □ 사용료 징수 가이드라인 제시

- 기관의 특성상 사용료 징수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하고 국·공유재산, 신탁관리 등을 통해 사용료 징수
- ※ 일부 시장형 공기업 등은 무료 개방 시 경영 및 수익 저하 문제 발생

### 공공저작물 사용료 징수 가이드라인(안)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저작권법 제24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으로 관리하는 경우 사용료 징수 가능
  - \* 단, 해당 저작물은 동조 제3항에 따라 공공누리 표시를 통해 자유이용 제공도 가능
- ② 공공기관의 경우, 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하고 신탁 등을 통해 사용료 징수 가능
- ③ 다만, 공공데이터법에 따라 제공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실비징수 가능

## 2

## 유통 및 이용 활성화

### ③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공공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 자유이용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공공누리’ 적용 확산

- 공공기관 보유 공공저작물에 대한 공공누리(KOGL) 적용원칙 구체화
  - 직원이 업무상으로 작성하였거나 저작권재산권 전부를 보유한 공공저작물인 경우 원칙적으로 공공누리 제1유형(상업적이용, 변경 가능)을 적용
    - \* 저작권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하였으나 기타유형(제2~4유형)의 적용이 필요한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하여 자유이용 제외대상으로 구분하고, 저작물의 특성에 따라 적용
  - 저작권재산권의 일부를 보유한 경우에는 공공누리 유형에 대한 동의를 받아 적용

#### 공공누리 적용 기본원칙

- ① 저작권재산권을 전부 보유한 저작물은 원칙적으로 1유형 적용
  - ※ 저작권재산권의 일부를 제3자가 보유하고 있으나, 저작물의 변경/상업적 이용제공 등 공공누리 제1유형 적용에 동의한 경우에는 제1유형 적용 가능
- ② 저작권재산권의 일부가 제3자에게 있거나, 초상권자로부터 제한적 동의(<예>상업적 이용 금지)를 받은 경우 공공누리 적용 허락을 받아 공공누리 제2, 3, 4유형을 적용

- 정부간행물 납본 지침(국립중앙도서관)과 동일하게 기록물 지침(국가기록원)도 공공저작물인 경우 공공누리 적용

#### □ 면책을 통한 민간 이용활성화

- 공공저작물 이용약관 보완 및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공공저작물 제공 및 이용에 대한 면책 규정을 도입하여 적극적인 이용 도모
  - 공공누리 이용약관을 보완하고, 이용자가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고지
    - \* 공공저작물포털에서 저작물 검색 후 해당 사이트로 이동 시 이용약관 제시(팝업형태)
  - 공공데이터법과 유사한 제공자/이용자 면책규정을 도입(저작권법 개정)

**제36조(면책) ①** 제공에 관하여 해당 공공기관과 그 소속의 공무원 및 임직원은 ... (중략) ... 이용자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민사상·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공공데이터가 제공된 경우 이를 이용한 자는 진정한 권리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 다양한 저작물 활용을 통한 신규 비즈니스 창출 지원

○ 스마트 TV용 에듀테인먼트 콘텐츠, 3D 프린터 활용 제품 등 다양한 공공저작물을 활용한 신규 비즈니스 창출

- 특히, 공공저작물을 활용한 제 2의 콘텐츠 창작 효과 도출

\* '13년 국내콘텐츠산업 91조 2,096억원,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12년 대비 4.5%, 약 4조원 ↑, 2014 콘텐츠산업백서)

형태	개방 저작물	개방기관(예시)	향후 민간 활용
 음원	'이야기 할머니' 음성 및 동영상 산출물	국학진흥원	IPTV용 에듀테인먼트 콘텐츠
 사진	문화재 및 풍경 사진	한국관광공사	음성 관광 가이드앱
 동영상	요가/생활체육 동영상	국민생활체육회	*VR 체감형 콘텐츠
 그래픽	문화재 3D 설계도	문화재청	3D 프린팅을 이용한 관광 기념품
 이미지	전통문양	한국문화정보원	개량 한복 등 패션
 어문	다양한 연구 보고서	행자부(프리즘)	전자 출판 및 신규 연구 등

\* VR[virtual reality] : 가상 현실, 3D 기술을 통해 현실과 동일한 시각적 효과 구현

□ 저작물 출처표시 가이드라인 제시

○ 이용자 편의를 위해 이용 유형 및 상황별 출처표시 기준 구체화

출처표시 가이드 예시
① 출판물 : 기관명 표시, 연구물은 인격권 존중을 위해 연구진의 성명 표시 권장
② 영상물 : 엔딩 크레딧 또는 자막 등으로 출처 표시
③ 음원 : 디지털파일명에 출처 표시(불가피한 경우 저작권자 동의 후 생략 가능)
④ 사진 : 사진 내 적절한 위치에 식별 가능한 출처 표시(편집물은 캡션 처리)
⑤ 제품 : 제품 디자인을 훼손하지 않는 차원에서 표기(또는 패키지에 표기)
⑥ 기타 SNS 등 : © 등의 마크로 단순하여 간략하게 출처 표시

○ 콘텐츠의 추가 가공 없이 상품화할 경우, 기관 홈페이지 등에서 자유이용이 가능함을 표시

#### ④ 기관/국민의 인식 제고를 통해 저변을 확대하겠습니다.

##### □ 교육 · 홍보 강화

- 공공기관 담당자 대상 자유이용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훈련 실시
  - 공공기관 대상 권역별 설명회(9월) 및 워크숍(11월) 개최
    - \* 참석 시 교육이수증 발급 및 필수 교육시간 인정 추진(기관협조)
  - 정부 3.0 등 공공기관 자체 교육 시 전문 강사 파견·지원
  - 공공기관 필수교육 과정에 「공공저작권 관리 과정」 포함 추진
  - 설명회 등 오프라인 교육훈련 참석이 제한되는 실무자를 위한 동영상 교육 콘텐츠 개발 및 무상 보급
    - \* 공공누리 포털을 통해 수강(주제별 3종 강의/PC 및 모바일 접속)
- 이용자인 국민 대상 온·오프라인 홍보 강화
  - 미디어와 협력, 홍보채널 다양화 등을 통한 대국민 접점 강화
    - \* 상반기 드라마 ‘화정’과 연계, 공공저작물 홍보 캠페인 실시
  - 1인 창조기업 및 벤처 등 사업화 사례 발굴·홍보 통한 인식 제고
    - \* ‘창조경제박람회(미래부 주관, 11월末)’ 참가, 우수 공공저작물 이용사례 홍보



### 3

## 관련 제도 정비

### ⑤ 개방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합리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 □ 신탁을 통한 자유이용 정책 보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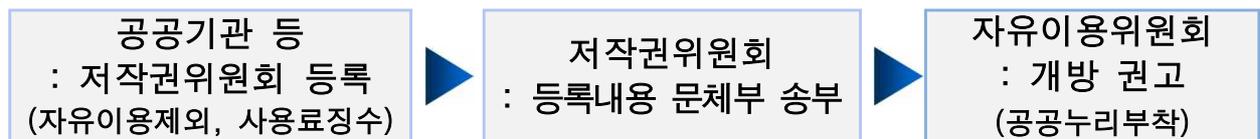
- 불가피하게 자유이용에서 제외되는 공공저작물은 공공저작물 신탁관리 시스템 등록을 통해 민간에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완
  - 민간기관 대비 저렴한 사용료 징수로 이용자 편익 제고
  - \* 한국문화정보원 공공저작권 신탁관리시스템([www.alright.or.kr](http://www.alright.or.kr)) 이용

#### 공공저작물 신탁 활용이 필요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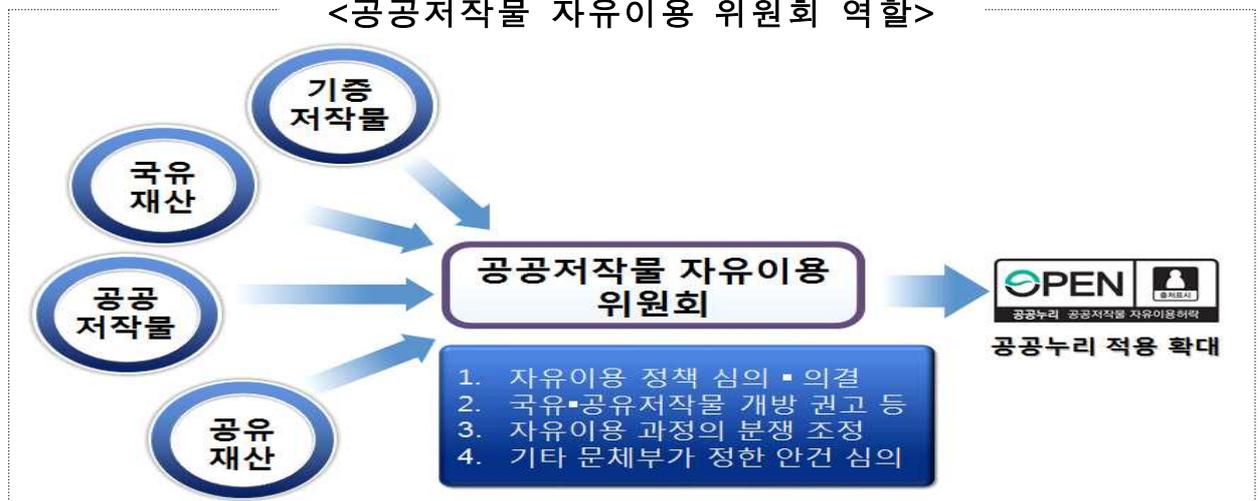
- ① 자유이용 허용시 국외 유출로 인해 국부 손실 우려가 있는 경우
- ② 무료 개방 보다 유료 개방이 적합한 경우(예: 공기업 제작 수익상품 등)
- ③ 변형시 국민 혼란의 우려가 있어 선택적 제공이 필요한 경우
- ④ 자체 보급 예산부족으로 출판권 설정이 필요한 경우

####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위원회 운영

- 자유이용 대상 제외 추진되는 공공저작물에 대한 검토 및 개방권고, 이용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위원회 설치·운영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위원회 역할>



□ **용역계약 일반조건의 합리적 해석**

- 국민의 자유이용이 바람직한 공공저작물로 판단되는 경우 저작권 재산권 전부를 발주처에 귀속할 수 있도록 추진
-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6조 단서에 따른 협의를 통해 달리 정할 수 있는 경우에 포함(기획재정부 유권해석)
-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을 위해 저작권재산권의 귀속을 과업지시서에 규정한 경우 현재 기재부의 용역계약 일반조건과 충돌되어 조달과정에서 반려 사례 발생

**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①**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 **공공기관 경영평가(정부 3.0) 평가지표 반영**

- 시책이행에 따른 인센티브가 없어 공공기관 경영평가 및 부처별 재정사업 자율평가 등의 평가지표에 공공누리 부착 시에 대한 가점 부여 추진

공공기관 경영평가 평가지표 반영(예시)			
<b>(가점) 홈페이지 저작권 정책 변경 실적(가점 1점) (신규)</b>			
<b>측정방법 및 측정기준</b>	○ 저작권법 일부개정사항을 반영한 홈페이지 저작권정책* 변경시 가점		
	* (예시) :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지침(고시) 참고		
	○ 배점 및 판단기준		
	배 점	1점	0점
	순 위	저작권 정책 변경	저작권 정책 미변경
<b>제출서류 (증빙자료포함)</b>	○ 저작권 정책 변경 화면 스크랩 등 증빙자료		

## V. 실행계획(Action Plan)

	관계 부처	주요 내용	시기
확보 및 수집 강화	문화체육 관광부	귀속 가이드라인 및 업무 체크 리스트 제시	~ `15년
		공공기관 범위 확대를 위한 법 개정 추진	`16년 ~
		품질저하 저작물에 대한 디지털 제작·보정 지원	`15년 ~
		민간기증 공공저작물에 대한 컨설팅 등 제공	`16년 ~
		저작권 구매 통한 양질의 공공저작물 확보	`16년 ~
		공공저작물 자동수집 확대 및 소스코드 배포	`15년 ~
		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센터 운영	`16년 ~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지침 개정	~ `15년	
	각 부처 / 공공기관	기관 보유 기증 저작물에 대한 목록 제공(분기별)	`15년~
		공공저작물 관리담당자 지정	~ `15년
각 기관의 홈페이지 저작권 정책 변경		~ `15년	
발주 시 민간 이용 활성화가 필요한 저작물에 대한 권리 확보 추진		`15년~	
이용 및 유통 활성화	문화체육 관광부	공공누리 적용원칙 구체화	~ `15년
		공공기관 대상 설명회 및 워크숍 개최	~ `15년
		온라인 동영상 교육콘텐츠 개발	~ `15년
		이용사례 발굴 및 홍보 강화	`15년 ~
		저작물 출처표시 가이드라인 제시	`15년 ~
		이용자/제공자 면책을 위한 법 개정 추진	`16년 ~
		다양한 저작물을 활용한 신규 비즈니스 창출 지원	`15년 ~
	국가기록원	기록물 지침에 공공누리 적용	`16년 ~
	각 부처 / 공공기관	공공저작물 관련 교육 시 담당자 참석	`15년 ~
		공공저작권 관리과정 필수교육 지정	`16년~
공공저작물 이용 사례 적극 발굴(공모전 개최) 및 각 기관 홈페이지 홍보		`16년~	
제도 정비	문화체육 관광부	공공저작물 신탁관리시스템 정비	~ `15년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위원회 설치·운영	~ `15년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대한 유권해석	~ `15년
	행정자치부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공공누리 표시 가점 적용	`16년~
각 부처 / 공공기관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평가요소화	`16년~	

## 참고 1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관련 경제 효과

###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의 가치

- 공공저작물을 이용허락에 따른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민간에서 무료로 활용하는 경우의 비용절감효과로 추정
  - 홈페이지에 게재한 공공저작물 전부를 무료로 자유이용 허락할 경우 그 경제적 추정가치는 최소 542억에서 최대 2조8000억원 규모
  - \* 공공저작물은 건당 사용횟수 제한이 없어 추정 가치는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음

<표-1, 공공기관 보유 공공저작물의 유형 현황(2013, 코리아리서치)> (단위 : 건)

저작물 식별코드	텍스트	이미지	비디오	오디오	소프트웨어	기타	합계
정부부처	288,940	43,039	13,770	345	58	6,440	352,592
정부 산하기관	1,482,291	567,511	190,265	29,068	107	3,148	2,272,390
기타 공공기관	876,812	277,254	631,134	96,921	92	604	1,882,817
지방 자치단체	731,073	602,951	164,250	20,395	2,816	1,933	1,523,418
자체 산하기관	630,891	221,801	23,546	3,229	108	-	879,575
기타	12,147	716,550	294	2	2	6	729,001
<b>총합계</b>	<b>4,022,154</b>	<b>2,429,106</b>	<b>1,023,259</b>	<b>149,960</b>	<b>3,183</b>	<b>12,131</b>	<b>7,639,793</b>

<표-2, 공공저작물 이용 시 추정 징수금액> (단위 : 원)

저작물 분류	저작료 징수 기준		저작물 수	합계	
	최소	최대		최소	최대
어문저작물	최소	1,390	4,022,154	최소	5,590,794,060
	최대	127,050		최대	511,014,665,700
이미지저작물	최소	18,000	2,429,106	최소	43,723,908,000
	최대	930,000		최대	2,259,068,580,000
영상저작물	최소	3,384 (30초 이하)	1,023,259	최소	3,462,708,456
	최대	(추가분 10초당 339)		최대	3,462,708,456~
음악저작물	최소	10,000	149,960	최소	1,499,600,000
	최대	180,000		최대	26,992,800,000
<b>총합계</b>				<b>최소</b>	<b>54,277,010,516</b>
				<b>최대</b>	<b>2,800,538,754,156</b>

- ※ 저작물 분류별 유관기관(신탁, 보상금, 대리중개업체)의 학습(교과서 및 출판물) 내 사용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 징수 기준 적용
- ※ 각 저작물은 표-1 공공저작물 유형을 적용, 소프트웨어와 기타 공공저작물은 징수 기준에 누락되어 제외

## 참고 2 공공저작물 제공 및 이용 프로세스

